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 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96호, 2023. 8. 8. 공 포, 2024. 2. 9. 시행)됨에 따라,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경력정 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확인·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

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예술활동 증명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·공유 등) 기관 등은 예술인 이 예술활동 증명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에 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경 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·공유할 수 있다.

- 1.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
- 2.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진행 사항 등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(예술활동 증명을 위한 개인
	정보 확인·공유 등) 기관 등은
	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을 받고
	자 신청한 경우에 법 제6조에
	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
	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	사항을 확인·공유할 수 있다.
	<u>1.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</u>
	2.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
	<u>심의 진행 사항 등</u>
	<u> </u>